

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[] 신청서
[] 변경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청인	성명 (명칭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	주소	(전화번호 :)

신청사항	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내용	면 적 (㎡)				금 액 (원)		
		최초	납부기한	허가 전	1회	2회	3회	4회
분할납부액	년 월 일	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		
변경	근거규정	[] 농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 호 [] 농지법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※ 해당란에 √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						
	납부기한	허가 전	1회	2회	3회	4회		
	분할납부액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		
	사 유							

「농지법」 제3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 관
시 · 도 지 사
시장 · 군수 · 자치구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	없 음
------	-----	-----	-----

※ 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절차 뒤쪽 참조

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

- 관련 법령 : 「농지법」 제38조제2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
- 분할납부 대상
 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
 -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(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)의 부지
 -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의 시설용지
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용지
 -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부지
 -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천만원 이상, 그 외의 자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
- 신청 시기 :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 할 때
- 신청 서류 : 분할납부신청서
- 관할청 검토사항 : 예산 및 자금 조달내역 타당성, 분할납부계획 타당성, 사업계획 확실성 등
- 관할청 처리사항
 - 분할납부 결정 시 농지보전부담금의 30%를 사업 허가등 전에 미리 납부하게 하고, 미납 시에는 농지전용 허가등이 거부될 수 있음을 농지전용신청자에게 설명
 - 분할납부 잔액에 대해서 허가일로부터 4년 범위 내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고, 회차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결정하되 최종납부일은 준공일 이전으로 하며,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(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)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리고 기일 내에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결정이 취소되고, 독촉장 발부,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각각 부과됨을 설명
 - 분할납부 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등의 신청일로부터 허가등 후 30일 이내에(「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) 변경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
 - 관할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분할납부 통지시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납입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를 공사에 제출
- 한국농어촌공사 처리사항
 -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자가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 발송 및 보증서 발행기관에 대지급금 청구와 청구사실을 보증서 예치자에게 통보

